

# 한국사회 성·인종차별문제 토론회

- 나 이제 할 말 있다 -

## 진행

사회 - 박경태 성공회대학

### §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한 한국 사회의 성·인종차별

미셀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 결혼이주자들이 본 한국 사회의 성·인종차별 -

레티마이투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 다문화정책에 가려진 젠더차별과 인종주의의 관계 -

정혜실 · 다문화가족협회

### § 난민·망명자들이 경험하는 한국 사회의 성·인종차별

토나 이음비 · 난민센터

### § 지정토론/전체토론

문현아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정정훈 · 공감 | 이성훈 · 국가인권위

2009년 8월 26일 오후 2-6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강당

성·인종차별 대책위원회

##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한 한국 사회의 성·인종차별

### A brief overview on the discrimination of migrant workers

미셸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Michel · Migrants' Trade Union

---

The incident that happened in Bucheon last July was not an isolated case of misunderstanding between a foreigner and a local. In fact, migrant workers have often been on the receiving end of verbal assaults, racial slurs, and even violence on a daily basis.

This incident caused quite a stir in the community both foreign and local and has even attracted the attention of local and foreign media. It has been given an adequate amount of coverage. Professor Banajit Hussain because of his South Asian ethnicity, being dark skinned, he was mistaken for a migrant worker not only by the perpetrator but even by the police as well.

The incident involving the professor and his companion achieved one thing in particular, and that is to expose the day to day challenges of the migrant worker. The migrant workers come from different corners of the globe, having varied race and ethnicity, having different religious and cultural backgrounds and about one third of the migrant population are women. The migrant workers are always regarded as poor, un educated, and vulnerable and thus,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one hundred percent of the migrant workers have fallen victim to racial and sexual discrimination at some point in their lives.

The incident of racial discrimination against Professor Hussain is nothing compared to what we, as migrant workers face in our daily lives. Professor Hussain's case was given attention because of the fact that his standing or class in the Korean society is perceived to be of higher importance and thus, require much clamor.

The fact of the matter is, migrant workers have been suffering from racial and sexual discrimination even before they have laid foot on Korean soil.

### **The discrimination under the EPS Law**

Although migrant workers are better off under the current EPS law in comparison to the trainee system, the migrant workers continue to suffer under the new system as they had suffered under the old. Despite claims of equal labor rights for migrant workers, the EPS Law has failed to secure the migrants position in society in terms of job security. It has also failed to protect them from abuse and unequal treatment because of their race, ethnicity and social standing in the society. The EPS Law aims to ensure the stability of the labor force for the company through restrictions such as the limitation on workplace changes, the time limit on which a worker would need to find a new company, the allowable reasons for which a migrant worker can ask for termination of contract, the restriction on migrant workers eligibility to invite their family members and the restriction on the migrant workers eligibility to apply for citizenship. There are also restrictions that limit the involvement of migrants in activities that may be deemed as political in nature.

These restrictions only show that migrant workers because of their social standing are treated as disposable and temporary. This considerably reflects the racial and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 workers who are comparably likened to machines or beasts of burden.

Even before the migrant worker comes to Korea, it is mandatory for an applicant to undergo pregnancy tests (women) and AIDS test (both men and women) as a requirement for qualification to work in this country. In more progressive nations, these mandatory tests are considered sexual discrimination on the assumption that pregnant women can never be productive and are a burden to the host country. Labeling AIDS victims are a threat to society and disregarding their rights to privacy is also sexually discriminatory. Being minorities, their social and human rights are often negated by the provision of restrictions and conditions for employment.

### **The discrimination against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The Crackdown on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nd their criminalization is the most evident example of racial discrimination. This marginalized group in society has suffered numerous deaths, injuries, abuse, violence, financial ruin and extreme psychological stress.

Aside from the crackdown being unconstitutional under the Korean law, it also shows blatant disregard of the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Undocumented workers having less protection from abuse, suffer as much as the EPS workers, if not more so. Although, they are not subjected to the restrictions of the EPS Law,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have less mobility.

Because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re criminalized in Korea the government agencies offer no protection to migrant workers against verbal, sexual and physical abuse.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who have tried to seek for police intervention/support, or have tried to report incidences of violence against their person would find themselves arrested and detained by the immigration instead of being given justice for the transgression that they have fallen victim to.

### **Migrant workers in the workplace**

Accommodations for workers are usually within the company premises to assure that there will be readily available workers on hand to meet production requirements and quotas. Typically, these dwellings do not meet the standards to assure that it is well suited to protect their health and comfort. Container boxes measuring an average of 9sqm would typically house two or three persons. These boxes usually are not well ventilated during the summer and insufficiently heated during the cold months. There is also a problem with cleanliness, insect and vermin infestation, filthy toilets, inconsiderate managers and noisy co workers that holds no regard whatsoever to the people who have worked the opposite shift and are resting during the day.

Incidences of migrant workers having finished working 13 hour shifts would be allowed to sleep for 2 or three hours before they will be forced to work overtime. Threats such as dismissal and deportation have always been common, there have also been numerous incidences of physical violence and verbal abuse, pay cuts have also been reported. Thus, under these threats, migrant workers are forced to render service at the expense of their health and safety.

Social imbalance is also evident in the workplace among native workers and migrants. The managers and/or the native workers would slap, swear at, and punch migrant workers in jest but the managers/native workers would consider it confrontational if the migrant worker initiated the same act.

The native worker may refuse to render overtime, he or she may even refuse to do a delegated task but the migrant worker would often be forced to accept these additional workload and should never refuse.

Citing these examples, the sub human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their disregard for their health and safety, their obvious disregard for the rights of the workers are evidence that racial discrimination is a part of the migrant workers life. Since they have “imported” them as workers, the utilization of their services should be maximized.

Religious and cultural differences are also areas of concern in the life of a migrant worker. An aversion to a particular type of food or certain religious practices has also been a source of conflict and/or abuse. Forcing migrant workers to go against their culture and religious beliefs are factors that cause undue stress and resentment on the side of the migrant workers.

Gender based discrimination on migrant workers in the work place is also common. Age and marital status being factors, the migrant workers personal life seems to be an extension of his work relations. Managers and native workers would give unsolicited advices regarding different personal issues like sexual preferences, marriage to Koreans (women migrants) and gays or lesbians being non existent in Korea. Under the guise of extended family relationship existing between migrants and Koreans these unsolicited advices are also discriminatory in nature. Under the assumption that migrants are not capable of making the right decision and choices, they (Koreans) feel it is necessary to give them (migrants) guidance regarding these issues.

Migrant women also being objectified in and out of the workplace are usually prone to unwelcome sexual advances. Their regard for migrant women as more sexually active and aggressive than Korean women is a blatant form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are also common in the workplace but migrant women fail to report these incidences out of shame and fear of losing their legal status and job security.

### **Discrimination outside of the workplace**

Discrimination outside of the workplace is varied in intensity. Subtle actions such as unwanted stares, their aversion to sit beside a migrant worker and direct insult as what the good professor has been subjected to.

Their aversion to migrant workers is rooted on the fact that since migrant workers

are laborers they immediately assume that migrant workers are uneducated, of low intelligence, lacked sophistication, dirty, stinky, rude and loud.

A poor command of the Korean language has also been a means for Korean vultures to take advantage of the migrant workers inability to argue. Migrant workers are usually taken advantage of by unscrupulous taxi drivers by overcharging taking long routes and harassing women migrant workers.

The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 workers are not exclusive to Koreans it is also evident among foreign expats who are living in Korea. These expats' reference to migrant workers as "smelly, dirty and rude migrant workers" and "these things" shows that even educated foreigners, assumingly exposed to diversity and had a higher degree of education would see and refer to migrant workers as sub human or not human at all.

### **Conclusion**

Racism and xenophobia is largely apparent in Korea and in the Korean psyche. Even their laws, under the guise of nationalism are exclusive designed to protect native Koreans and put limitations on the rights of migrants.

The immigration law and the EPS law was made to marginalize the migrant workers, and in that sense very discriminatory. In limiting their ability to freely move about in the pursuit of a better life and better status, the migrant workers are left in a dilemma. They can either chose to live under constant oppression or fight for their right, but in the process risk losing their documentation and their job security.

These incidents reflect how receptive the Korean society is on the idea of multiculturalism. Their ambitious dream of establishing a multi national, multi cultural society will remain as it is...a dream. As long as there is no legislation that would properly enforce the criminalization on all forms of discrimination, these despicable acts of abuse and violence will continue to happen and will in fact, worsen in the in the light of the current economic crisis.

In my perspective, to achieve a truly global nation we should take down borders, we should break down barriers and we should accept the fact that life and people come in a variety of race, color, ethnicity, gender, sexual orientation, religion and culture. If this fact was not accepted, Peace will remain to be elusive.



## 결혼이주자의 성·인종차별 사례

### Gender ra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marriage migrants

레티마이 투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Le Thi Mai Tu ·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

저는 많은 국제결혼한 사람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의 출신국은 베트남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을 떠나 이렇게 먼 곳인 한국에 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 제가 4 년 전에 아는 사람을 통해 한국인 남편을 만나게 되어 결혼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새 삶을 익숙해지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베트남의 친절은 저에게 소중하지만 예전처럼 거기에 평생 살 곳이 아닌 그냥 고향이 되었고, 이 한국 땅이 제 삶의 뿌리를 내릴 곳이고 저의 미래는 여기라고 단단히 믿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받지 않았지만 저는 제가 한국의 한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나 한국사람들이 말하는 만큼 저는 ‘다문화’ 라는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차별을 당한 적도 있고 저의 주변 사람들도부터, 또는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음을 보고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느냐, 성별이 무엇이나, 피부가 어떤 색이나, 종교가 무엇이나, 가난하게 사느냐, 직업이 있느냐, 좋은 직업을 가졌냐, 힘든 직업을 가졌냐, 영어를 할 줄 아느냐 등등... 여러 가지 외면을 따지고 그 사람이 좋다, 안 좋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차별은 이주여성한테 더 심합니다. 똑 같이 국제결혼을 했는데 영어를 잘 하고 서양에서 온 여성이라면 가족부터 사회에서 까지 대우를 받고 동남아에서 왔다, 영어를 할 줄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지도 않고 대번에 무시해 버립니다.

아래는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차별을 예를 들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사례 1:

A 씨는 4 년 전 한국에 입국하였고 남편이랑 시집식구들이랑 같이 살고 있다. 그런데 인도에서 왔고 피부색이 검어서 껌둥이라고 불린다.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은 피부와 생김새가 한국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온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피부색이나 생김새 때문에 놀림을 적게 받는다. A 씨는 착하고 성실한데 사람들이 그 좋은 면을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가난한 나라에서 왔고 더럽다고만 한다. 그래서 A 씨는 아예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한다. 아이를 낳으면 검은 피부 때문에 차별을 받고 상처를 받아서 아이가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단지 피부색이 검기 때문에 놀림을 받고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을 상처들을 받아야 하니 참으로 화가 납니다. 사람을 볼 때는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제대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사례 2 :**

B 씨는 베트남에서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에 온지 6년이 되었다. B 씨에게는 5살 아들과 다음 달이면 돌이 되는 예쁜 딸이 있다. 한국말을 한국에 산 6년에 비하면 잘 하진 못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요리를 잘 하고 애들한테 잘 챙겨주는 친구이다. 아이들이 다 예뻐서 누구 봐도 칭찬을 한다. 그런데 그 칭찬의 말과 함께 언제나 “시집 잘 왔다” 라는 말이 나온다. 그 말을 듣는 B 씨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칭찬의 말을 듣고 고마운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그냥 대답하면 될텐데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B 씨는 “시집 잘 왔다” 라는 말은 칭찬하는 뜻이 아니라 이주여성을 무시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B 씨는 능력이 있어서 결혼을 잘 한 것인데, 그녀의 능력보다는 가난한 나라에서 운이 좋아서 결혼을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은 이주여성들이 다 가난하게 살았고 결혼을 통해 풍요로운 한국에 왔고 꿈 꾸던 멋진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한국에 왔지만 우리가 태어난 나라에서 결혼하고 살았어도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꿈이 있고 새로운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런 꿈이 없었다면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것이고, 한국은 지금처럼 편리한 교통이나 발전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꿈이 없었다면 사람을 대신해서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해주는 로봇과 기계가 없을 것이고 우주비행선을 타서 우주로 나가는 것 등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 **사례 3:**

요즘 이주여성들 위한 한국어 교육, 문화교육, 취업교육 등 프로그램들을 하는 곳을 종종 볼 수 있다. 교회나 복지관, 동사무소에서든 나서서 이주여성을

돕겠다고 한국어교실을 연다. 싫든 좋든 이렇게 이주여성 프로그램을 하는 여성단체, 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곳에서는 자주 설문조사를 한다. 강요하지는 않지만 이미 그 곳에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도 거절하기가 부담스럽고 마음에 걸려서 하게 된다. 그런 기관뿐만 아니라 연구자나 학자까지 자기의 연구나 공부를 위한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한다. 그 분들은 자기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여성정책이나 지원을 할 때 쓰려고 한다. 좋은 면으로 보면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고 이주여성들의 삶에 필요한 것과 정책을 세우는데 사용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설문조사의 내용이 너무 많고 많은 질문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저와 많은 이주여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연구실에 연구되는 흰 쥐들이랑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 **사례 4:**

이주여성들은 본국의 가족 내에도, 한국의 가족 내에서도 가족으로부터 성차별을 당한다. 오래 전에는 사회가 남성 중심이고 여성은 가부장적인 삶을 살아가야 했다. 여성은 가정에서 많은 일들은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되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회가 달라졌다. 사회가 달라졌는데도 사람들의 보수적인 생각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사회의 구성은 개인 가족인데 가족으로부터 차별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느 이주여성은 남편이 말을 잘 모르는 자신에게 손과 팔로 설명을 하는데, 남편은 자신을 가르치며 위에 있는 손이고 너는 아래에 있는 손이라고 가르쳤다고 한다.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시어머님을 모시고 시동생이 먹고 남긴 그릇을 씻으라고 하는 남편이나 시부모가 있다.

남자나 여자나 성별에 관계없이 꿈과 욕구가 있습니다. 여자는 무슨 일만 할 수 있고 남자는 무슨 일만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을 서로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시키는 일이 없어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사례 5:**

지난 봄 소풍 때 찍은 사진들을 CD 로 옮기려고 이주여성인권센터 근처에 있는 한 사진관에 갔었다. 사진관 주인은 친절한 표정으로 손님을 맞았지만 나는 마음이 급해 가격을 물어보지도 않고 사진기를 맡겼다. 나중에서야 속으로 ‘아이쿠 !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았네’ 그러면서도 ‘괜찮겠지 나에게

왜 비싸게 받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안심을 시켰다.

“네! 다되었어요. 삼 만원이예요” 사진관 주인이 웃으면서 말했다.

“삼 만원?” 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사진이 많아서 그렇다고 대답을 해주었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으로 센터로 가면서 생각을 했다. ‘그래 내가 바보였지! 사진을 옮기기 전에 얼마인지 물어봤어야 했는데..’ 내가 센터 선생님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사진만 옮기는데 삼만 원이라고?” 하며 모두 놀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 선생님이 내가 가지고 온 그 사진관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보셨다. 그런데 그 사진관에서 “200 장에 만오천원” 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화가 났고, 전화를 해 준 선생님과 같이 사진관에 가서 따졌다. 사진관 주인은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계산이 틀렸던 것이라고 내가 없는 사이에 한국인 선생님에게 말했다.

선생님에게 사진관 주인부부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이 세상에 참 무섭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선생님이 그렇게 확인을 했어도, 혼자 이 사진관에 돌려받으러 왔었다면 삼만 원은 물론 돈을 더 내야 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주여성들이 물건을 살 때, 한국어 발음이 서툴면 갑자기 주인이 통명하게 대한다거나 바가지로 썼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주여성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결혼하고 왔기 때문에 한국의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국민으로서 차별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오든, 피부색이 검은 그 사람은 나와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존중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주여성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온, 한국인보다 피부색이 짙은, 나이 어린 외국인, 그것도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차별 때문에 많은 이주여성들이 억울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려는 사람을 밟지 말아주기를 바랍니다.

가족 내에서 무시를 하고,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고, 도망 갈 까봐 하는 의심 때문에 자유를 빼앗거나, 부인의 국적이나 영주권 신청을 미루고,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주여성들이 힘을 가지지 못 하게 하는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에 남자가 없거나 여자가 없으면 삶에 재미가 없을 겁니다. 사회가 다양해야 삶에 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보수적인 생각을 바꾸고 새 것을 받아들여야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 다문화정책에 가려진 젠더차별과 인종주의 관계

### Gender and racial discrimination disguised in the policies of multiculturalism

정혜실 · 다문화가족협회

Jung Hye sil · Multicultural Family Association

---

2009년 8월 22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에서 가족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외래가족으로서 파키스탄인으로서 한국여성과 결혼하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족이 인터뷰사례로 기사화되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주민증 가진 한국인인데 이방인 취급 서럽죠”이다. 전체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색안경이라 함은 그 안에 한국여성에 대한 성적인 호기심이 담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의 사건처럼 거기엔 성차별적인 시선이 내포되어 있고, 어떻게 그런 나라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냐의 시선으로서 인종차별적인 시선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사에 대하여 한국인들의 반응 중 부정적인 글들이 댓글로 올라오는 경우는 더욱 노골적이고 심하게 표현된다.

21 세기 한국은 다문화시대라고 정부는 주장한다. 그 근거로서 외국인이 백만을 넘었으며, 결혼비율에서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8 쌍 중 1 쌍이라고 한다. 문화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등 각 정부기관과 지자체들이 서로 경쟁적이면서도 중복적인 다문화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최근에는 다문화가족 복지수요를 위한 전수조사까지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의 기사와 댓글을 보면 과연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가능한가? 아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다. 성차별적이면서도 인종차별적인 댓글이 인터넷에 버젓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나 언론사도 상당히 무감하기 때문이다. 쓰레기와 바퀴벌레로 묘사하거나, 미개인, 흑인 비슷한 용모라는 식의 인종차별적인 댓글을 여러 개 보면서 그 중 몇 개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고 남은 것이 이 수준이라면, 삭제된 글의 수준은 지금 사례로 든 내용보다 훨씬 심한 댓글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이나 인종에 관한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이 일부 몰지각한 소수라고 생각지도 않는다. 특히 국가기관 중 대사관과 같은 관공서 사이트 조차도 이러한 일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는데, 파키스탄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대사관 조차도 성과 인종차별적인 글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그것을 방치하는 사이트였다. 이러한 글들의 방치는 한국여성이 어리석게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도록 내버려둔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2003년부터 주 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의 공지사항에 지금(2009년 8월 24일)까지 올려있는 글이다.

♦

♦

♦

♦

♦

어떻게 위와 같은 글이 파키스탄에 주재하고 대사관 사이트에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지, 과연 이런 글들을 미국과 같은 서구 국가들에 주재하면서도 올릴 수 있는 지 묻고 싶다. 바로 이러한 국가기관의 태도는 외국인혐오증을 부추기는 안티 외국인 운동을 벌이는 단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고, 이들은 이러한 글을 온라인상에서 여러 곳으로 퍼나르며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주재하고 있는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왜곡된 시선으로 판단하고, 한국인 여성들을 자신의 주체성도 없는 유혹당하는 피해자 여성으로만 규정하는 이러한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고가 오히려 한국여성을 차별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발표자이면서 당사자인 본인은 1994년에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한 한국여성이다. 입국 당시에는 공항의 별도 사무실에 불려가서 1시간 이상을 취조당하시피 하였다. 밖에서 기다리는 부모님 때문에 나가 봐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하며, 내가 미국남자랑 결혼했어도 이렇게 했겠느냐고 묻자, 아니라고 간단히 대답이 돌아 왔을 때의 분노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 당시 남편과 결혼했을 때 남편은 결혼과 관련한 어떠한 비자도 받을 수 없었다. 다행히 그 때 파키스탄과 한국이 무비자협정을 맺고 있어서 3개월마다 외국에 다녀오는 것으로 체류를 지속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체류자격으로는 한국에서 직장도 구할 수 없었고, 사업도 할 수 없었으며, 의료보험도 없어서 우리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외국인으로서 진료비를 남들보다 10배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야 했다. 그러나 그 당시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은 바로 주민등록증이 나왔고, 그들은 체류자격이나 기타 국민이 누리는 혜택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었다. 그러한 법률적 차별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여성들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이의가

제기되고, 또 결혼한 이민자 여성들의 위장결혼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양성평등이라는 취지로 모든 결혼한 외국인은 2년 이상의 체류기간이 넘으면 귀화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바뀐다. 하지만 그 기간에 비해 귀화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가정폭력등과 같이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할 경우에 가정과 생계를 동시에 이어가야 할 여성들에게 귀화시험이 큰 장벽이 되기에 귀화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귀화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그래서 지금의 F2 비자와 귀화의 조건은 90년대 초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이주관련단체들이 해온 국제결혼 가정 관련 지원 사업들이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함께 이루어지면서 다문화가정이 한국에서 살아가고 정착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다문화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실천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의 다문화정책은 젠더차별과 인종차별이라는 그늘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예로서 첫째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배제와 소외를 낳는 차별적인 법이다. 한국인과 결혼 한 사실에 초점을 둠으로써 다문화가 가진 어의를 거스리면서 다시 혈연으로서의 민족이라는 이름에 매달리고 있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제 3 조 정의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러한 정의로만 따진다면 이주노동자가족이나, 난민가족 등은 배제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배제의 대상은 다문화정책의 시행 대상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는 사실상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 가족들과 그 자녀들에 대해서 아무런 지원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음을 드러내는데, 만약 신분마저 미등록일 경우에 이주노동자 가족들 중 자녀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경우에는 진학을 꿈꿀 수도 없고, 직업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대학을 갈 수도 없는 아이들, 그래서 꿈을 상실한 아이들로 하여금 공장으로 가서 단순 노동직을 하며 살도록 구조적으로 강제하는 사회인 것이다.

그리고 난민의 경우에는 국가의 내란이나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한국에 살게 된 경우인데, 그들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와 다르게 대우 받는다. 이런 이러한 차별적 난민 대우에 대하여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민족이기에 북한 이탈주민들에게는 정착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보해주고, 직업교육도 가능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온 난민들에게는 그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없이 오로지 체류 자격에 대해서만 보장해준다. 하지만 그들도 한국에 살자면 거주할 곳이 있어야 하고, 적응하기 위해 배워야만 하는 과정들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책은 그러한 지원이 전무하다 할 수 있다.

최근 방글라데시 치타공 지역에서 와 있는 줌머족 대표를 만난 적이 있다. 그가 사는 김포지역은 줌머족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 곳이 재개발로 인해 개발 붐과 땅값 상승으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이 살던 집에서 살 수 없게 되고, 그렇게 저렴한 월세 가격인 방도 구할 수 없어서 모두들 걱정이다. 하지만 정부에선 그들에게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자격조차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적이 없는 난민일 경우도 있다. 그러면 귀화도 불가능하다고 하다. 국적을 포기 할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정당화 하는 우리의 다문화정책의 현실이다.

두 번째는 다문화정책시행에서 드러나는 차별들이다. 현재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는 양성모두에게 필히 평등한 정책을 지원한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모든 정책지원은 결혼이민자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되는 지원 일색이다. 우선 한국어 배우기 시간편성만 봐도 이 모든 것이 주중에 오전시간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외국인 남성 배우자들은 배울 시간이 맞지 않는다. 경기도에서 나오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관보 “Happy Family”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초점을 맞추어져 편집된다.

왜 이렇게 정책에서 결혼이주남성들은 배제 되는 걸까? 그 이유는 여전히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뿌리 깊은 가부장제 의식으로서 젠더차별을 상징하는 “출가외인”이라는 관념과 맞닿아 있다 하겠다. 즉 여자는 시집가는 것으로서 가야할 한국여성들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식 때문에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 며느리로서의 교육과 민족의 자녀를 교육시키는 어머니로서의 교육을 위해 한국어교육의 필요와 한국사회적응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이지만, 이주남성에게는 교육의 필요성도 그다지 강조하지도 않지만, 결혼자체가 증가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부담이 되고 있다.

그렇기에 결혼관련 비자 면접 시 한국대사관에서는 한국여성들에게 아주 불쾌할 정도로 이 결혼에 대하여 부모는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 한국여성들에 대하여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주여성들과 그 남편인 한국남성들은 자신들을 ‘다문화가정’ 이라고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하면 그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정이라는 호명자체가 이미 인종차별적이면서 계급차별적인 명명이 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사업에서 항상 불리어지는 다문화가정 앞에 수식어는 소외되거나, 어려운 이라는 단어들이다. 이러한 수식어는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서 스스로 설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면서 그들을 다시 낙인화하고 소외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또한 많은 다문화관련 프로그램에 미술치료, 심리치료, 독서치료등 ‘치료’ 가 붙는다. 다문화가정은 교정받아야 하고, 치유되어야 하는 병든 가족인가? 끊임없이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그 자녀를 한국사회의 부적응자인 것으로 묘사하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현재의 다문화관련 사업들은 다시 한번 한국사회의 정상가족이 아닌 것으로 낙인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 서구 백인과 결혼 한 사람들에게 다문화가정이라는 말을 붙이고자 하지 않는다. 최근 모 재단과 함께 다문화관련 사업을 논의 하는 가운데서도 “아무래도 다문화가정이라 고 하면은 동남아나 서남아에서 온 결혼이주자들이나 이주노동자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잘사는 나라에서 온 그들에게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지만 다문화가정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다.

왜 서구 백인들은 한국문화에 대해, 한국어에 대해 다른 다문화가정들처럼 열심히 배워도 되지 않는 것인가? 그들은 영어를 써도, 불어를 써도, 한국어가 서툴러도 비난 받지 않는가? 그것이 왜 자녀를 기르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는 가? 이러한 것은 맨 처음 인용한 댓글 중 D 의 글에서처럼 서구 백인은 문명화되었고, 우리나라는 문화생활 도덕수준이 낮고, 동남아와 같은 아시아는 더욱 미개하다는 의식 수준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종적으로 위계화하고, 한국은 그나마 중간이기에 계몽을 해야 할 대상으로서 다문화가정은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하고 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지만, 백인은 제외되는 것이다.

늘 소수인 다문화가정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결코 한국사회를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일 수 없음을 처음의 댓글들의 인용에서

보여준다. 만약 한국사회가 일방적 한국화를 지양하고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댓글의 유포나, 대사관과 같은 관공서 사이트의 내용과 같은 것이 방치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글들이 얼마나 범죄적인가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으로서 인권교육이 필요하며, 그 인권교육 안에 반드시 성과 인종이라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공무원과 교육자 양성평등교육과 같이 인종에 대한 감수성 교육이 학교교육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교육은 소수자 교육이 아니라 다수자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다수자 교육을 위한 도구들인 교재들의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고 과거 성차별적 묘사로 인해 수정되었던 교과서들처럼 현재의 교과서들도 성과 인종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검토되고 수정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의 시행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법이 없다고 해서 인종차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은폐되고 말해지지 않았던 차별의 문제들을 이제 드러내 놓고 말하고 시정해야할 때가 왔으며, 앞으로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 진입에 있어서 차별적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문제점을 가시화하고 이슈화해서 고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난민·망명자들이 경험하는 한국 사회의 성·인종차별

### Gender and racial discrimination disguised in the policies of multiculturalism

토나 이옴비 · 난민센터

Thona Yiombi · Refugee/ NANCEN researcher

---

After South Korea signed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he Status of Refugees' in 1992, as of this August, around 3,000 foreigners have applied for refugee status to the Korean government. The number of foreigners applying for such status is still growing. However, presently only 117 among us has been officially granted refugee status by the Korea governm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status granting record is extremely low.

It is not to say that the granting rate itself is the sole most important thing. However, as aforementioned, rather than the actual granting, the importance lies on procuring fair and transparent examination procedures with rational decisions when considering individuals for refugee status. In this light, unreasonable immigration regulations and procedures related to the status granting examinations are among the biggest problem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refugee policies. Moreover, it is undeniable that underneath these regulations lies a culture of ethnocentrism, exclusive nationalism, and xenophobia that takes root in a homogeneous ethnicity.

#### **A Homogeneous Ethnicity, Xenophobia, and Refugees**

A majority of Koreans might think that racial discrimination does not stand as a trait of the Korean society. However, we believe such discrimination is pervasive throughout the Korean community. From ethnic Chinese who have been settled in South Korea for about 100 years, migrant workers, to even Koreans with mixed blood have been faced with cruel discrimination. Moreover, refugees are not considered eligible for human rights protection, and even there exists xenophobic tendencies caused by irrational perceptions such as fear of the increase of a mixed blood population due to interracial marriages of both foreigners and refugees with Koreans.

Koreans have been reluctant to accept "Foreigners" into their community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of different ethnicity, race, and nationality without due

consideration of their mentality, capacity, and situation. Racial discrimination amounts to only a self assuring selfishness that springs from a feeling of superiority by demeaning the other person for any reason given. The Korean people feel wronged and angered when being discriminated abroad for their race and nationality, yet in the light of their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it is clear that the Koreans possess a double sided conscience.

### **Problems in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System**

Not only in the Korean society, but in each society of the world as well, racial and gender discrimination, along with authoritarian and xenophobic tendencies are pervasive, and these, in fact, deprive human beings of their dignity and freedom. The apathetic and even hostile disposition towards refugees and asylum seekers is conspicuous in the attitudes of the government of the host country, media and general public, and this tendency is made evident by the racism and xenophobia and passive domestic law towards the refugees. Each country's system regarding either entry permissions or status granting procedures is being misused so as to hinder entry admissions or even the status application filings. Such misapplication of regulations spreads to other forms of ill treatment such as discriminatory detentions, limited benefits, and restriction on free mobility, education, and labor rights. Under such system, even if the applicant should be eligible for refugee status from the host country, the refugee would find himself alienated and excluded from most social benefits.

Notwithstanding that Korea, as a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for UNHCR(EXCOM), has the international obligation of providing refugees with active policies that secure and guarantee their rights, the Korean government tends to shirk away from the plight of the refugees.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 claims its refugee status determining system to be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t is clear that such system has many flaws and limitations as stated below.

#### **(1) Excessive Imposition of Proof Responsibility**

The Korean government gives lack of substantive proof of qualification as the foremost reason for refusing to grant refugee status to asylum seekers. The government seems to have a strong prejudice that in most cases, applicants have entered the country for economic reasons and they seek for refugee status as a means to lengthen their residing period as their legal staying period has expired. The

actuality of the Korean government as imposing excessive burden of proof on the asylum seekers is shown by the fact that among the applicants there some recognized as mandate refugees by the UNHCR and that most of applicants are from countries such as Afghanistan, DR Congo, Iraq, and the like, where it is politically unstable and where human rights are pervasively violated.

In most situations people who have fled from oppression and seek for asylum barely carry around any necessities, an identification card or document in their possession. Therefore, it is international custom to give the benefit of the doubt to an asylum seeker, if the given claim is coherent, convincing and trustworthy and there is no considerable reason that goes against it, even if the necessary evidence to prove the claim is insufficient.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does not share the burden of proof with the applicant, thus the asylum seeker has the responsibility to present tangible evidence to be eligible as a refugee.

## (2) Incoherent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The government's decision to grant the first refugee status to an asylum seeker has been criticized by some human rights activist as an act of a mere political show. The reason for such skepticism lies on the fact that many other applicants with similar background have been rejected. As mentioned above, even on the cases in which the UNHCR has designated as being mandate refugee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refused to grant them such status arguing there's lack of sufficient evidence. It was hoped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UNHCR branch office in Seoul would galvanize the Korean government to take more heed to the plight of the refugees and yet almost nothing has changed since then. The government has been asked constantly to let the UNHCR participate in the Committee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an inter government agency, so as to properly establish the standards and the overall process of the eligibility examination and to systematize the administration of the refugees and consequently ensure transparency of the process. However, the government has not shown any plans to cooperate with the UNHCR. Maybe this time yes. But I don't have any information about.

## (3) Time limit for Appeals

Applications for refugee status have to be filed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the country. Last February the Ministry of Justice suggested the amendment of the Immigration Law to extend of this period to one year. Notwithstanding the

Immigration Law still harbors many problems and shortcomings. There is an opinion that one year rule also violates the 1951 Convention which does not prescribe any limit of the period for application. Moreover, Article 76 (4) of the Immigration Law limits the period for presenting an appeal within 7 days. Obviously, this is an extremely short period for the asylum seeker to prepare the necessary resource materials. Meanwhile, since both the application and the appeal are reviewed by the same agency, the possibility of a decision to be overturned is quite low. So far, there are no cases in which the refugee status has been granted through an appeal.

#### (4) Lack of Professionalism of the Agency in Charge

The department within the Ministry of Justice that is in charge of refugee related matters has been marked by inefficiency.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Law the Justice Minister is in charge of the final decision regarding the refugee eligibility. However, the actual application filing, interviewing, and fact verifying are done by immigration officials working in the Inquiry Department of the Immigration Bureau. As known, the main work of these officials is to keep control over illegal immigrants. Consequently, the concept of human rights is most likely to be remote to these officials when they handle interviews and inquiries of the asylum seekers.

Meanwhile, the applicants are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hus, the languages that they speak range from French, Chinese, different languages from African minorities, and several others. Yet, funds to hire interpreting services and solutions to facilitate communication are barely used. The Ministry of Justice argues that it has well equipped interpreting personnel and that no difficulties have been faced regarding the actual communication with the asylum seekers. However, in reality,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an applicant has not been able to present his case in a detailed and precise manner due to the meager interpreting services used

#### **Treatment of the Refugees and Asylum seekers**

At present, policy wise and materially, the government gives barely any aid to asylum seekers.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Australia do not allow applicants to work, yet they provide them a limited amount of monetary aid and health care. Such kind of aid is critical in Korea, since the application examination period can last from a minimum of 6?2 months to a maximum of 3 years. The economic and social hardships that these applicants go through this period are hard to ignore.

Even the policy in regards to the material and political support that should be given to a recognized refugee is unclear. The legal position and residence qualifications of a refugee are not stated clearly in the Immigration Law, thus, the rights of a refugee regarding education, labor, and welfare are not unquestionable. So far only a foreign registration card (solely for identifying purpose) and the national insurance have been issued.

The Korean government alleges that therefugees are indeed employed and thus are able to receive welfare benefits guaranteed by their work. Thus, the government argues that there is no special need for them to give these applicants any more benefits in regards to monetary aid. Such treatment reflects of refugees applicants that the government is still trapped in its prejudice that the applicants are illegal migrant workers that have entered the country for economic purposes, and through such biased perception they have ignored completely the situation that these applicants live in. This shows clearly the government's lack of effort in understanding the harsh reality of these applicants, making these people live in ever more deteriorated conditions. In reality, in order to survive day by day, many of these applicants try to get any type of job and usually end up working on one day basis or as a migrant worker. Yet, even after they get such jobs, due to the frequent interviews requir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hese applicants have to be absent from their work quite often and eventually get laid off. The government's claim that these people are employed and enjoy welfare benefits is just a mere act of play on words, distorting the reality.

As explained so far, the pursuit of a homogeneous ethnicity based on blood lineage and exclusive nationalism of the Korean society pose as roadblocks on the fair treatment of asylum seekers and refugees and such perceptions are being institutionalized through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ss and related practices. This situation will not change by simply amending the Immigration Law so as to place the national guidelines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nly acknowledging the deeply rooted nationalism and xenophobia and overcoming them can achieve a more in depth improvement.

The time has come to finally overthrow the ethnocentric ideologies. Race, ideology, religion, and ethnicity: these are the actual materialization of antagonistic tendencies all having caused hideous wars at the cost of many lives and the deterioration of the human spirit.

Unfortunately, the Koreans have been slow to admit and acknowledge that such



conflict exists in their community. The Koreans may seem to advocate for a 21st century that can achieve an integrated and open community, universality, and a society that respects humanism and cultural diversity. Yet, the Korean nation is one that is still trapped in a bundle of laws and regulations that reflect a nationalistic and ethnocentric mentality. The basic human rights policies that the Korean society adopts towards foreigners and refugees will be the barometers for the treatment that Koreans residing abroad, who can at any time become refugees themselves, receive.